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0 선고 2020나67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0 선고 2020나67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14 선고 2019가단507064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김윤석

피고, 항소인 1. A

2. B

변론 종결 2020. 10. 13.

판결 선고 2020. 11. 1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가단5070649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 1. 피고 A은 원고에게 84,452,797원 및 그중 81,328,657원에 대하여 2019. 3. 26.부터 2019. 7. 18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9. 1. 3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. 1. 3. 접수 제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9. 1. 4.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9. 2. 8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
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. 1. 4. 접수 제2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. 2. 8. 접수 제2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항소취지]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용한

판사노태헌

판사김창현

별지